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34
----------	-----

2019년 3월 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9년 3월 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 가. 제안이유
 - 서남물재생센터는 강서구 등 9개구 1개시 발생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87년 최초 직영운영 이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업체(주-서남환경)에서 위탁 관리하여 왔으며 2019. 6. 30. 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 직영과 위탁으로 이원화된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4개 물재생센터 “공단 전환” 완료시까지 수탁사 공개모집에 의한 운영업체 변경시 운영의 일관성 훼손 등 혼란을 감안

-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장기간 운영으로 능력이 검증된 기존 수탁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위탁사무 : 물재생센터 운영 및 물재생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
- 위탁기간 : 2019. 7. 1. ~ 2022. 6. 30.
(단, 위탁기간 중 공단설립 시 계약해지)
- 소요예산 : 연 77,149백만원(최근 3년 평균)
- 수탁사 선정 : 재계약

2)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강서구 마곡동 91)
- 부지면적 : 1,032천 m^2 (건물면적 : 64개동 80,152 m^2)
- 시설용량 : 163만 m^3 /일
- 차집관로 : 95km(7개소)
- 처리구역 : 143.23 km^2 (9개구 1개시)
 - 전역 : 영등포·관악·동작·구로·양천·금천·강서구
 - 일부 : 강남·서초·광명시

3) 주요 위탁내용

-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 처리 및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4)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 그간의 위탁경과 〉

◇ 서남물재생센터 개원	: 1987. 6. 30
◇ 최초위탁(1차)	: 2001.8.1 ~ 2004.6.30. [수탁업체 : (주)서남환경]
◇ 재 계약(2차)	: 2004.7.1 ~ 2007.6.30. [“]
◇ 재 계약(3차)	: 2007.7.1 ~ 2010.6.30. [“]
◇ 재 계약(4차)	: 2010.7.1 ~ 2013.6.30. [“]
◇ 재 계약(5차)	: 2013.7.1 ~ 2016.6.30. [“]
◇ 재 계약(6차)	: 2016.7.1 ~ 2019.6.30. [“]

5) 재계약 사유

-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장기간 운영경험과 노하우 축적한 국내 유일 업체
 - 현 수탁업체인 (주)서남환경은 1997년 IMF 사태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위탁 권장에 따라 기존 운영인력인 공무원들이 고용승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6차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대규모 하수처리시설(163만톤)의 장기간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국내 유일의 수탁업체임.
-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운영실적 우수(평균 89점 이상)
 - 위탁 기간 중(‘15.1.1.~’17.12.30.) 외부전문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우수(평균 89.46점)한 것으로 평가됨.
 - 운영성과 목표(계획) 대비 실적(최근 3년간)

구 분	목 표	실 적	달 성 율
2015년	90점 이상	93.06점	100.0%
2016년	90점 이상	87.75점	97.5%
2017년	90점 이상	87.57점	97.3%

- 환경부 지침의 개선대상 기준인 70점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또한 직영센터(평균 85.57)에 비해 우수하게 운영된 것으로 조사됨.

[센터별 성과평가 결과('15~'17)]

평 가 분 야	직영 및 전체위탁			
	중랑(직영)	난지(직영)	탄천(위탁)	서남(위탁)
평균점수(3년간 평균)	83.21	87.94	91.33	89.46

○ 2017년 탄천물재생센터 재계약 사례 적용

- 2017년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 ('15.1.1. ~ '17.12.31.)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업체선정 방안을 검토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였으나, 시의회에서 기존 탄천환경이 재계약 실패시 법인 해체로 인한 고용 등 사회 문제 대두 및 법적 분쟁 소지 가능성과 4개 센터 운영체계를 공단으로 통합을 추진 중인 현 상황을 감안하여 공단화 시까지 기존과 같이 재계약 추진토록 함.

6) 주요 운영성과

- 운영개선 및 기술개발 노력을 통한 물재생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
 - 특허 : 2건(슬러지처리용 약품 혼합시스템 외 1건 : 서울시로 권리이전)
- 창의적인 시설 운영으로 예산 절감실행('16년 ~ '18년)
 - 잉여소화가스 활용 열병합발전설비 운영에 따른 서울시 수입증대 : 6,300백만원
 -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한 전력비 절감 : 58백만원
 - 음식물 침출수 처리비용 수입 증대 : 4,613백만원

- 물환경 연구소 운영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 추진
 - '16년 : 하이드로프레스 탈수기와 건조기를 이용한 슬러지 탈수/ 건조기술 개발(롯데건설 등 4개사 공동연구) 외 1건
 - '17년 : 하수찌꺼기 소각재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인(P) 회수시스템 개발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공동연구) 외 1건
 - '18년 : 총인 수처리약품 현장실증실험 연구
- 대외기관 수상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운영능력 신뢰도 제고
 - '16년 :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 '17년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이행 실적평가 수도권 대기환경 우수상 수상
폐기물 적정관리 등 환경보전에 기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표창
 - '18년 : 교육기부 진로체험제도 모범적 운영기관 인증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민간위탁]

○ 하수도법 제19조의2

▶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건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재계약]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④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② 시장은 위탁대상 업무 경험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이 위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 최근 3년간('15~'17) 관리대행 운영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89.46점으로 환경부 지침의 개선대상 기준인 70점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며,
직영센터(평균 85.57)에 비해 운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기간이 2019년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장기간 운영으로 능력이 검증된 기존 수탁사((주)서남환경)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의3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의회 동의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해당 사무를 재위탁¹⁾ 또는 재계약²⁾ 하는 경우 매 4회 차마다 의회 동의를 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2017년 7월,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7년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되, 부칙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점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민간위탁조례가 개정·시행('17.7.13.) 되면서,
-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 2001.8월 이후 그동안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해왔기 때문에 개정된 민간위탁조례상 7년이 경과한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시점에 해당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1)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현황

- 서남물재생센터는 서울시 강서구 등 9개 자치구³⁾와 경기도 광명시 (일부)의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9] 서남물재생센터 현황

구분	내용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총면적	1,065,000m ²
처리구역 면적	11,795 ha
시설용량(하수)	총 163만 m ³ /일
시설용량(정화조)	4,000 kl/일
하수처리구역	하수(9개구 1개시), 정화조(9개구)
운영형태	민간위탁 : (주)서남환경

- 서남물재생센터는 서울시와 2001년 8월 최초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차례의 재계약이 이루어졌음.

[표 10]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추진 현황

구분	기간	관리대행사	계약방법
1차	2001.8.1 ~ 2004.6.30.	(주)서남환경	최초위탁 (수의계약-조례근거)
2차	2004.7.1 ~ 2007.6.30.	(주)서남환경	재계약 (수의계약-조례근거)
3차	2007.7.1 ~ 2010.6.30.	(주)서남환경	"
4차	2010.7.1 ~ 2013.6.30.	(주)서남환경	"
5차	2013.7.1 ~ 2016.6.30.	(주)서남환경	"
6차	2016.7.1 ~ 2019.6.30.	(주)서남환경	"

- 한편, 서울시가 금회 관리대행코자 하는 서남물재생센터의 사무내

3) 전역 :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일부 : 강남구, 서초구, 광명시

용은 [표 3]과 같고, 위탁기간은 2019.7~2022.6월까지 3년(단, 위탁기간 중 공단설립 시 계약해지)이며, 소요예산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운영예산인 약 771억 49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표 11]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사무내용

-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 처리 및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 관리대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상기 [표 3]의 사무내용을 살펴볼 때 공익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주체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①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고, ②부분적으로 공신력이 요구되나 관리대행에 큰 문제가 없으며, ③서울시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무에 해당하지만 시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관리대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 그동안 6차에 걸친 (주)서남환경의 관리대행 실적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과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최근 3년간 평균 89.46점으로 우수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표 4] 참조), 그리고 직영센터(평균 85.58)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표 4] 참조) 등 에서도 더욱 그러함.

[표 12] 물재생센터별 성과평가 결과('15 ~ '17)

평가분야	물재생센터			
	중량(직영)	난지(직영)	탄천(위탁)	서남(위탁)
평균점수(3년간 평균)	83.21	87.94	91.33	89.46

- 또한, 환경부의 ‘2014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분석(2015.10월)’ 보고서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587개소로 이 중 관리대행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설이 전체 대비 76.1%인 447개소에 달하고 있고,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비용을 분석한 결과 직영보다 관리대행 운영시 톤당 하수처리비용이 약 13.3원 저렴⁵⁾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관리대행 방식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재계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 건

- 서울시는 (주)서남환경이 대규모 하수처리시설(163만톤)의 장기간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국내 유일의 수탁업체이고,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운영실적 우수(평균 89점 이상)하다는 점과 지난 2017년도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재계약 사례와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 현 수탁자인 (주)서남환경과 기존처럼 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총 3년으로 하되 현재 추진 중인 공단 설립(서울특별시상 방

4) 환경부, 2015, 2014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 환경부

5) - 하수 1톤당 처리비용 : 직영 206.9원, 민간 196.7원, 공사·공단 147.6원

- BOD 1kg당 처리비용 : 직영 1,266.8원, 민간 1,321.0원, 공사·공단 962.9원

- 공단·공사기업은 상대적으로 시설용량 50천톤/일 이상인 처리시설의 비율(전체 시설용량의 91.8%)이 높아 톤당 하수처리단가가 낮음

침 제383호., 2016.12.7.)이 완료(2021년 예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임.

-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7년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7.8.30.)에서 (주)탄천환경의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계약기간 만료(2015.1.1.~2017.12.31.)에 따른 경쟁입찰방식의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바 있으며,
- 이때 우리 위원회는 (주)탄천환경이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 법인 해체로 인한 고용 등 사회 문제 대두 및 법적분쟁 소지 가능성과 센터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익적 측면, 그리고 당시 서울시가 4개 물재생센터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공단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공단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과 같이 재계약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으로 의결한 바 있음.
- 참고로, 재계약과 경쟁입찰의 장단점([표 5]6) 참조)을 살펴보면, 경쟁입찰로 수탁사가 변경될 경우, 입찰업체간 경쟁에 따른 위탁비 절감이 예상되고, 참가업체 범위를 넓혀 기회균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표 13] 재계약과 경쟁입찰의 장·단점 분석

구분	장 점	단 점
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시설에 대한 노하우 보유로 시행착오 방지 • 지속적인 고용보장 • 시설의 장기연속운용으로 책임운영체 수립가능 • 재입찰에 따른 행정력 소요 억제 • 일관성 있는 수처리계획 수립 및 집행 용이 • 운영이상 시 책임소재 시비가 적음 • 공익시설에 대한 신뢰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운영조직의 관성화 가능성이 있음 • 다수 업체 참여기회 제한 • 입찰과 비교했을 때 위탁비 절감요인 감소
경쟁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로 참가범위를 넓혀 기회균등 및 공정성 확보 • 다수 업체 경쟁으로 업체 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 기업 이윤 추구 • 운영기관의 변경 시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 가능성 • 초기단계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문제

6)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2017.9월)

구분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으로 인한 위탁비 절감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 재위탁 업체선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우려 •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 효율적인 예산계획의 수립 및 집행이 어려움

- 물재생센터의 운영 목표가 생산성이 아닌 공익성에 있다는 점에서 경쟁입찰 도입 시 계약기간(3년) 이후의 재계약을 담보할 수 없어 자칫 수탁업체가 단기 수익성 제고에 치우칠 경우 안정적인 유지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도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 역시 이러한 점과 서울시가 현재 직영과 관리 대행으로 이원화된 센터 체계를 공단설립을 통해 일원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탁사 선정방식을 ‘재계약’으로 제안했다고 사료됨.
- 이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18.10월 개정, 2019.1.1.부터 시행)’ 발주방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관리대행 선정을 위한 발주방법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⁷⁾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조례의 경우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

7)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p.7 : ○ 발주방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채택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고 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8)의 단서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으로서 시장이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기존 수탁사를 대상으로 그동안 재계약(수의계약)을 시행해 온 것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특별한 하자가 없다 할 것임.
- 다음으로, 행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시는 '97년 국가 외환 위기 당시 저비용·고효율 체제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에 참여한 퇴직 공무원들의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전직자에 대한 신분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 시장방침(하수67712-1544, 1999.11.30.)과 조례개정을 통해 퇴직 공무원이 종업원 지주회사로 설립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법적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근거할 때,
- (주)서남환경의 경우 설립당시 참여공무원이 94명이었고 현재도 44.7%인 42명(직원총수:175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립 당시 서울시가 시장방침으로 약속한 사항이 행정신뢰 측면에서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가 현재 공단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입찰로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경우 의도치 않게 공단설립의 주체가 되어 특혜적 시비 논란이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공단설립 계획 자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생략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 경험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이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체의 재정비가 요구되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본 동의안의 재계약 방식은 행정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사료됨.

■ 종합의견

- 서남물재생센터는 2001.8월 이후 현재까지 약 18년간 관리대행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왔다는 점에서 금회 관리대행 동의안의 취지와 타당성은 충분하다 사료되고,
- 수탁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탁자인 (주)서남환경과 재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안 역시, 물재생센터의 운영·관리가 공익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과 (주)서남환경의 탄생배경, 그리고 서울시가 공단화를 통한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할만하다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2021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물재생센터 일원화(공단화)가 되지 않을 경우 관리대행 업체 선정 방식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인지?(정진술 위원)

답변) 물재생센터 일원화(공단화)가 어려울 경우 향후 관리대행 업체 선정 시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할 계획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

의안 번호	434
----------	-----

제출년월일 : 2019년 2월 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남물재생센터는 강서구 등 9개구 1개시 발생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87년 최초 직영운영 이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업체(주-서남환경)에서 위탁 관리하여 왔으며 2019. 6. 30. 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 나. 직영과 위탁으로 이원화된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4개 물재생센터 “공단 전환” 완료시까지 수탁사 공개모집에 의한 운영업체 변경시 운영의 일관성 훼손 등 혼란을 감안
- 다.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장기간 운영으로 능력이 검증된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사무 : 물재생센터 운영 및 물재생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
- 위탁기간 : 2019. 7. 1. ~ 2022. 6. 30.
(단, 위탁기간 중 공단설립 시 계약해지)
- 소요예산 : 연 77,149백만원(최근 3년 평균)
- 수탁사 선정 : 재계약

나.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강서구 마곡동 91)
- 부지면적 : 1,032천 m^2 (건물면적 : 64개동 80,152 m^2)
- 시설용량 : 163만 m^3 /일
- 차집관로 : 95km(7개소)
- 처리구역 : 143.23 km^2 (9개구 1개시)
 - 전역 : 영등포·관악·동작·구로·양천·금천·강서구
 - 일부 : 강남·서초·광명시

다. 주요 위탁내용

-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 처리 및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라.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 그간의 위탁경과 〉

- ◇ 서남물재생센터 개원 : 1987. 6. 30
- ◇ 최초위탁(1차) : 2001.8.1 ~ 2004.6.30. [수탁업체 : (주)서남환경]
- ◇ 재 계 약(2차) : 2004.7.1 ~ 2007.6.30. [“]
- ◇ 재 계 약(3차) : 2007.7.1 ~ 2010.6.30. [“]
- ◇ 재 계 약(4차) : 2010.7.1 ~ 2013.6.30. [“]
- ◇ 재 계 약(5차) : 2013.7.1 ~ 2016.6.30. [“]
- ◇ 재 계 약(6차) : 2016.7.1 ~ 2019.6.30. [“]

다. 재계약 사유

○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장기간 운영경험과 노하우 축적한 국내 유일 업체

- 현 수탁업체인 (주)서남환경은 1997년 IMF 사태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위탁 권장에 따라 기존 운영인력인 공무원들이 고용승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6차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163만톤)의 장기간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국내 유일의 수탁업체임.

○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운영실적 우수(평균 89점 이상)

- 위탁 기간 중('15.1.1.~'17.12.30.) 외부전문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우수(평균 89.46점)한 것으로 평가됨.
- 운영성과 목표(계획) 대비 실적(최근 3년간)

구 분	목 표	실 적	달 성 율
2015년	90점 이상	93.06점	100.0%
2016년	90점 이상	87.75점	97.5%
2017년	90점 이상	87.57점	97.3%

- 환경부 지침의 개선대상 기준인 70점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또한 직영센터(평균 85.57)에 비해 우수하게 운영된 것으로 조사됨.

[센터별 성과평가 결과('15~'17)]

평 가 분 야	직영 및 전체위탁			
	중랑(직영)	난지(직영)	탄천(위탁)	서남(위탁)
평균점수(3년간 평균)	83.21	87.94	91.33	89.46

○ 2017년 탄천물재생센터 재계약 사례 적용

- 2017년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 ('15.1.1. ~ '17.12.31.)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업체선정 방안을

검토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였으나, 시의회에서 기존 탄천환경이 재계약 실패시 법인 해체로 인한 고용 등 사회 문제 대두 및 법적 분쟁 소지 가능성과 4개 센터 운영체계를 공단으로 통합을 추진 중인 현 상황을 감안하여 공단화 시까지 기존과 같이 재계약 추진토록 함.

바. 주요 운영성과

- 운영개선 및 기술개발 노력을 통한 물재생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
 - 특히 : 2건(슬러지처리용 약품 혼합시스템 외 1건 : 서울시로 권리이전)
- 창의적인 시설 운영으로 예산 절감실행('16년 ~ '18년)
 - 잉여소화가스 활용 열병합발전설비 운영에 따른 서울시 수입증대 : 6,300백만원
 -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한 전력비 절감 : 58백만원
 - 음식물 침출수 처리비용 수입 증대 : 4,613백만원
- 물환경 연구소 운영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 추진
 - '16년 : 하이드로프레스 탈수기와 건조기를 이용한 슬러지 탈수/ 건조기술 개발(롯데건설 등 4개사 공동연구) 외 1건
 - '17년 : 하수찌꺼기 소각재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인(P) 회수시스템 개발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공동연구) 외 1건
 - '18년 : 총인 수처리약품 현장실증실험 연구
- 대외기관 수상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운영능력 신뢰도 제고
 - '16년 :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 '17년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이행 실적평가 수도권 대기환경 우수상 수상
폐기물 적정관리 등 환경보전에 기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표창
 - '18년 : 교육기부 진로체험제도 모범적 운영기관 인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간위탁]

○ 하수도법 제19조의2

▶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건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재계약]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④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② 시장은 위탁대상 업무 경험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이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최근 3년간('15~'17) 관리대행 운영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89.46점으로 환경부 지침의 개선대상 기준인 70점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며,

직영센터(평균 85.57)에 비해 운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작성자 : 물재생시설과 위탁관리팀 마권택(☎2133-3844)